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64호

울산광역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울산광역시 개방형직위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주요업무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주 요 업 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방농촌 지도관 (일반임기제 포함)	1명	2년	• 농업기술사업 기획 및 평가 • 농업인 교육훈련,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 조직 육성 • 농업경영 개선 및 상담, 농촌지도사업 운영 • 작물 및 스마트농업 육성 기술지도 • 영농기계화 및 화훼기술 개발 지도 • 양묘장 관리, 도시민 원예활동 지원 •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근무기간은 총 5년의 범위 이내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7. 26.>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6. 6. 30.>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경력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능)

구 분		응시 자격요건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 지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의2)을 의미함
경 력 기 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 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관련 분야		일반농업,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경영, 원예, 생명유전, 축산, 농식품개발 등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4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절차를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5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4호*	-	70,490천원	하한액의 130% 범위 내 지급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심사

▸(심사항목)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나. 시험일정

○ 면접시험 : '26. 12. 15. ~ 12. 18. 예정, 개별통지

※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7. 1월 중, 개별통지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11. 23. ~ 11. 27.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팀(본관 9층)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등기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을 사전에 유선(☎052-229-2442)으로 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8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자격요건 응시자 의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울산광역시 수입증지(1만원)** 첨부(구입처 : 시청 1별관 경남은행)
- 우편접수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1만원)**를 구입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 아님에 유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력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을 첨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번역문(공증필) 첨부(필요시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증명서에는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 직인날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중 필요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추가 제출 필요함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연구논문은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다른 모집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원본 제출된 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울산광역시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7일 이상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총무과(☎052-229-2442)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인적사항

성 명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직급	비 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방농촌지도관	

□ 제출서류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2. 응시자격요건 응시자 의견서		
3. 응시원서		
4. 이력서		
5. 자기소개서		
6. 직무수행계획서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0. 졸업(학위)증명서		
11. 경력(재직)증명서		
12.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4.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② 기타	
15.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하고, 위 순서대로 제출**
(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클립 혹은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2호>

응시자격요건 응시자 의견서

성 명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직급	비 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방농촌지도관	

구 분		응시 자격요건	해당 여부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 지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의2)을 의미함	
경 력 기 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 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관련 분야		일반농업,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경영, 원예, 생명유전, 축산, 농식품개발 등	

※ 응시자가 해당되는 자격요건에 "○"표시 <중복표시 가능>

성 명 : (서명)

<별지 제3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울산광역시 개방형직위)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성명			
2026년 월 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아래 해당 금액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를 구입(시청 1별관 1층 경남은행)
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연구관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2.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00기업(00팀)	20XX. X. X ~ 20XX. X. XX	대리		상근
	00상사(00과)	20XX. X. X ~ 20XX. X. XX	과장		상근
					시간제 (주20시간)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OO학	20XX. X. X.	학사
	OO학	20XX. X. X.	석사
	OO학	20XX. X. X.	박사

3. 기타 실적

수상실적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연구실적	제 목	연구자/저자	발표논문지(논문지 종류) / 발표대회 / 출판사	발행(발표)연월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2장 이내 작성 가능)

※ 자격증 및 경력은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별지 제5호>

자 기 소 개 서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지원동기,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가치관, 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서명)

<별지 제6호>

직무수행 계획서

○ 작성 요령

- 별도양식은 없으며,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요약서 A4 2매 이내 첨부)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함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사항, 경력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에서는 개방형직위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사항, 4대 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공무원 채용 관리	공공기록물 보존기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공무원 채용 관리	공공기록물 보존기간까지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예시) 720200-2853119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10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기관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기 간	부 서	직급(위)	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술)	
	20XX.XX.XX. ~ 20XX.XX.XX.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 ○ (전화 : - -)

<참　　고>※ 근무기관의 별도 증명서 발급 서식이 없을 경우 활용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폰: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 근무일수	년　월　일	주 근무시간	시간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위)	특이사항
~		(구체적으로 기술)		
~				
~				
~				

담 당 자	(인)
문의전화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근무기관 주소 및 연락처 :

참고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Ⅰ.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보직가능 직급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경력직 또는 임기제	지방농촌지도관

5. 주 요 업 무 내 용	비중(%)
○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관리	15
○ 청사, 양묘장, 과학영농시설 등 각종 시설물 관리	15
○ 농업인, 농업경영인, 관련단체 육성 지원	15
○ 영농기계화, 농산물 가공·저장, 농업경영 개선 지도 등	15
○ 농작물 재배, 식량작물 및 우량품종 보급·육성	10
○ 축산기술 개발·보급·지도, 친환경 농업육성, 지역특화작물 개발 등	10
○ 시가지, 교량 등 도심 화훼식재 관리	10
○ 도시민 원예활동 및 귀농·귀촌 지원, 치유농업 육성	10

6. 관 련 분 야
일반농업,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경영, 원예, 생명유전, 축산, 농식품개발 등

7. 필 요 지 식 및 기 술
○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 농촌행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조직통솔 능력이 있는 사람

Ⅱ. 직무수행요건

<table>
<tr><th colspan="2">1. 임용자격 요건</th></tr>
<tr><td>가. 필수요건</td><td>① 학력제한 ■ 무 □ 유
② 필수 자격증 ■ 무 □ 유
③ 기타 필수요건 ■ 무 □ 유</td></tr>
<tr><td rowspan="3">나. 경력요건</td><td>(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td></tr>
<tr><td>(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td></tr>
<tr><td>(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td></tr>
</table>

※ 관련 분야 : 일반농업,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경영, 원예, 생명유전, 축산, 농식품개발 등

2.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ii)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iii) 종합적인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ⅰ)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ii)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iii)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변화관리 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ii)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 iii) 고객 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ii) 업무개선 능력 iii) 자원활용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ii)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iii)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능력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 무 □ 유 ③ 정보화 능력 ■ 무 □ 유